

# 2016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 2.

노원구청장 (인)

◆ 우리구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는 6,94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57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 6,083억원보다 866억원이 많(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227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283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39억원입니다.

◆ 우리구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2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7.64%입니다.

◆ 우리구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1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구의 재정은 유사단체에 비해 예산규모는 크나, 보조사업 비중이 65.61%로 높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owon.kr/new/nowon/nowon.jsp?mid=570502>)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석민수(02-2116-3162)

#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노원구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6,949	6,373	577	6,083	5,649	434
	세 출 예 산	6,949	6,373	577	6,083	5,649	434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19.21	17.55	1.66	36.73	36.60	0.13
	재정자주도[당초]	47.64	45.97	1.47	55.37	54.87	0.5
	통합재정수지[당초]	△11	24	△36	3	△4	7
재정운영계획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 영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재정자립도/자주도 :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자체수입에 잉여금을 포함하여 산정

## 【유사단체 유형별】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충남 천안시	경기 성남시 경기 안양시 전북 전주시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경기 화성시 경남 창원시	경기 용인시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시-(2)	경기 의정부시 경기 군포시 충남 아산시 경북 경주시 경남 양산시	경기 평택시 경기 광주시 전북 군산시 경북 구미시	경기 시흥시 경기 김포시 전북 익산시 경북 경산시	경기 광명시 강원 춘천시 전남 여수시 경남 진주시	경기 파주시 강원 원주시 전남 순천시 경남 거제시
	시-(3)	경기 이천시 경기 오산시 충북 충주시 전남 광양시	경기 구리시 경기 하남시 충북 제천시 경북 김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의왕시 충남 서산시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경기 과천시 충남 당진시 경남 통영시	경기 포천시 강원 강릉시 전남 목포시
	시-(4)	경기 동두천시 강원 삼척시 전북 정읍시 경북 영천시	경기 여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 남원시 경북 상주시	강원 동해시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 경북 문경시	강원 태백시 충남 논산시 전남 나주시 경남 사천시	강원 속초시 충남 계룡시 경북 영주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부산 기장군 경기 가평군 충남 홍성군 전남 영암군 경남 거창군	대구 달성군 강원 홍천군 충남 예산군 전남 무안군	인천 강화군 충북 진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칠곡군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함안군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전남 해남군 경남 창녕군
	군-(2)	경기 연천군 충남 서천군 전남 영광군 경북 울진군	강원 정선군 충남 태안군 전남 장성군 경남 고성군	충북 영동군 전북 고창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하동군	충북 괴산군 전북 부안군 전남 신안군 경남 함양군	충남 금산군 전남 화순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합천군
	군-(3)	인천 옹진군 강원 고성군 전남 보성군 경북 고령군	강원 횡성군 충북 옥천군 전남 장흥군 경북 성주군	강원 영월군 충북 증평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예천군	강원 평창군 전북 순창군 경북 영덕군 경남 남해군	강원 철원군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경남 산청군
	군-(4)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전북 임실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강원 양구군 충남 청양군 전남 곡성군 경북 청송군	강원 인제군 전북 진안군 전남 구례군 경북 영양군	강원 양양군 전북 무주군 전남 함평군 경북 봉화군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전남 진도군 경북 울릉군
자치구	구-(1)	서울 성북구 서울 강서구 서울 송파구	서울 노원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강동구	서울 은평구 서울 관악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서초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남구
	구-(2)	서울 종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중구 서울 중랑구 서울 금천구	서울 용산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동작구	서울 성동구 서울 도봉구	서울 광진구 서울 서대문구
	구-(3)	부산 진구 대구 북구 인천 연수구 광주 서구 울산 남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울산 북구	부산 사하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부산 강서구 인천 중구 인천 계양구 대전 서구	대구 동구 인천 남구 인천 서구 대전 유성구
	구-(4)	부산 중구 부산 남구 부산 사상구 광주 동구 울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북구 대구 중구 광주 남구 울산 동구	부산 동구 부산 금정구 대구 서구 대전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연제구 대구 남구 대전 중구	부산 동래구 부산 수영구 인천 동구 대전 대덕구

## 2 예산규모

###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94,947	652,138	0	16,854	25,95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458,361	527,535	573,019	637,255	694,94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22,300	100	488,267	100	532,920	100	596,158	100	652,138	100
지방세	59,243	14.03	60,503	12.39	59,690	11.2	62,258	10.44	66,342	10.17
세외수입	36,446	8.63	48,609	9.96	32,200	6.04	32,353	5.43	48,954	7.51
지방교부세	6,136	1.45	4,898	1	5,790	1.09	6,036	1.01	6,223	0.95
조정교부금 등	137,427	32.54	142,506	29.19	151,681	28.46	163,414	27.41	179,159	27.47
보조금	183,048	43.35	231,751	47.46	274,008	51.42	322,097	54.03	341,460	52.36
지방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9,551	1.79	10,000	1.68	10,000	1.5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우리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94,947	652,138	0	16,854	25,95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458,361	527,535	573,019	637,255	694,94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22,300	100	488,267	100	532,920	100	596,158	100	652,138	100
일 반 공 공 행 정	34,483	8.17	42,674	8.74	35,965	6.75	34,897	5.85	26,134	4.01
공공질서 및 안전	712	0.17	740	0.15	661	0.12	667	0.11	734	0.11
교 육	12,003	2.84	12,604	2.58	13,412	2.52	13,593	2.28	13,378	2.05
문 화 및 관 광	10,721	2.54	9,096	1.86	8,113	1.52	10,432	1.75	18,541	2.84
환 경 보 호	14,239	3.37	14,953	3.06	12,969	2.43	15,001	2.52	27,233	4.18
사 회 복 지	220,313	52.17	270,357	55.37	320,677	60.17	371,544	62.32	400,314	61.38
보 건	11,325	2.68	13,405	2.75	14,103	2.65	17,207	2.89	18,827	2.89
농 립 해 양 수 산	0	0	0	0	0	0	0	0	0	0
산 업 · 중 소 기 업	1,240	0.29	1,315	0.27	641	0.12	1,226	0.21	933	0.14
수 송 및 교 통	3,977	0.94	4,479	0.92	4,221	0.79	4,169	0.7	3,823	0.59
국 토 및 지 역 개 발	4,419	1.05	4,500	0.92	4,088	0.77	4,571	0.77	8,803	1.35
과 학 기 술	0	0	0	0	0	0	0	0	0	0
예 비 비	4,248	1.01	5,317	1.09	5,330	1	5,903	0.99	6,130	0.94
기 타	104,621	24.77	108,827	22.29	112,739	21.15	116,948	19.62	127,288	19.5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94,947	699,755	717,421	736,831	756,655	3,605,609	2.1
자 체 수 입	122,746	118,646	119,798	121,999	124,213	607,402	0.3
의 존 수 입	528,317	536,564	552,731	569,383	586,455	2,773,450	2.6
지 방 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884	44,545	44,891	45,449	45,987	224,756	1.2
세 출	694,947	699,755	717,421	736,831	756,655	3,605,609	2.1
경 상 지 출	155,803	151,429	156,722	160,908	169,253	794,115	2.1
사 업 수 요	539,144	548,326	560,698	575,923	587,402	2,811,493	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658,450	717,515	59,065	1.09
노원구	637,255	694,947	57,692	1.1
공사·공단	15,271	16,297	1,026	1.07
출자·출연기관	5,924	6,271	347	1.0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공사·공단(1개) : 노원서비스공단
- ▶ 출자출연기관(1개) : 노원교육복지재단

### 3 재정여건

#### 3-1. 재정자립도[당초]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2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9.21	652,138	125,296	526,842	0	0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산정시 보전수입에 해당하는 잉여금(10,000백만원)을 자주재원으로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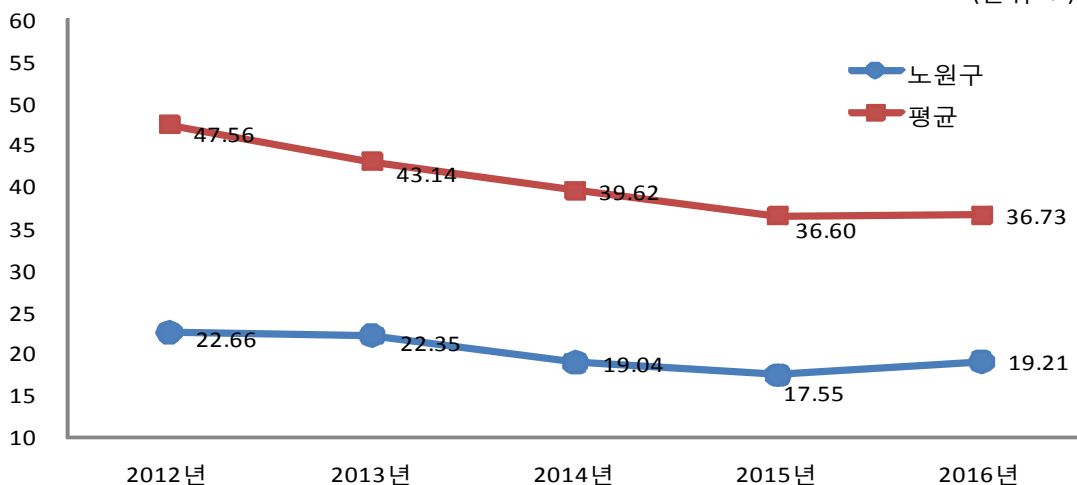
####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22.66	22.35	19.04	17.55	19.21
최종예산	20.53	19.91	19.2	17.62	-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 3-2. 재정자주도[당초]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우리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7.6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7.64	652,138	310,678	341,460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산정시 보전수입에 해당하는 잉여금(10,000백만원)을 자주재원으로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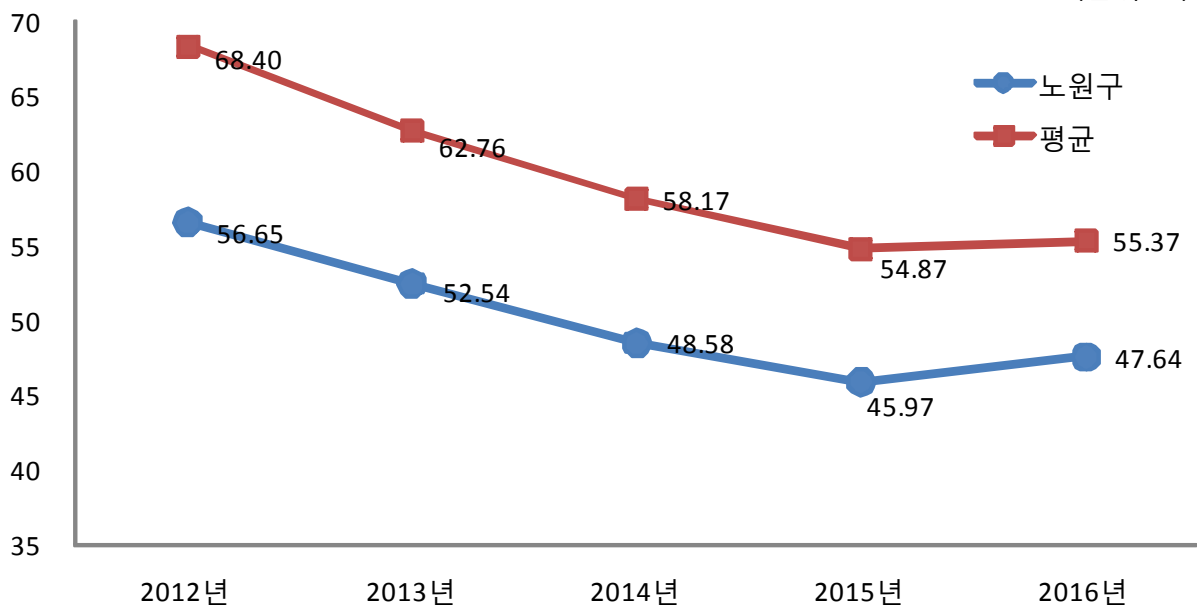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56.65	52.54	48.58	45.97	47.64
최종예산	52.48	48.53	47.38	44.63	-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



### 3-3. 통합재정수지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우리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51,031	668,842	2,401	5,114	2,713	19,393	671,555	△20,524	△1,131
일반회계	642,138	651,343	0	0	0	10,000	651,343	△9,205	795
기타 특별회계	7,148	15,172	79	1,574	1,495	9,393	16,667	△9,519	△126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1,746	2,327	2,322	3,540	1,218	0	3,545	△1,800	△1,800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의 수입의 경우 보전재원은 공제, 지출의 경우 회계간 거래 및 자치단체간 거래(우리구의 경우 보조금 반납금) 공제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137	△4,212	△13,256	△15,813	△20,524
통합재정수지 2	7,299	6,616	266	2,431	△1,131

## 4 재정운용계획

###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6	36,261
여성정책추진사업	19	21,58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4	14,09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589

▶ 20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구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652,138	522	3

▶ 2016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b>총 액</b>		<b>522,000</b>	
교통지도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교육장비 (이색교통수단) 구매	18,000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프로그램교실 방음벽 설치	25,200	
복지정책과	푸른사랑 가족봉사 짜장면 DAY 운영	1,800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컴퓨터교실(해피실버) 운영	10,062	
공원녹지과	영축산 진입로 운동기구 및 정자 설치	13,500	
공원녹지과	공릉동 중랑천변 산책로 설치	135,000	
공동주택지원과	테니스장 조명시설 LED등 설치	17,550	
공원녹지과	양지근린공원 내 공연시설물 설치	63,000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을 위한 투척용 소화기 배부사업	5,400	
장애인지원과	엄마, 우리 조금만 쉬었다 가요 !	18,000	
공원녹지과	중현어린이공원 보수	82,800	
복지정책과	노원, 잔치! 잔치! 열렸네	1,800	
복지정책과	음식나눔 축제	2,700	
공원녹지과	씨알 어린이 공원 개선사업	45,000	
공원녹지과	갈말근린공원 내 꽃터널길 조성	82,188	

###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51	157	146	668,992	611,754	57,238
감사담당관	1	1	6	5	176	183	△7
행정지원국	1	7	21	26	129,149	121,514	7,634
기획재정국	1	7	22	23	16,206	18,441	△2,235
교육복지국	1	14	35	25	421,926	391,890	30,036
도시계획국	1	5	19	17	9,376	5,942	3,433
교통환경국	1	9	31	29	58,826	42,859	15,967
보건소	1	7	21	20	29,131	26,993	2,138
의회사무국	1	1	2	1	4,202	3,931	27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9.21	47.64	61.38	14.75	65.61	82.7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8,100	78,100	0
	부단체장	56,100	56,100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45,200	1,112,656	△532,544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10,800	110,800	0
	의회운영업무 추진비	116,000	116,000	0
	의원국외여비	68,250	68,250	0
지방보조금		8,280,759	6,904,297	△1,376,531
통장 활동보상금 (706명)	수당	200	200	0
	상여금	400	400	0
	회의참석수당	50	5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556명)		3,112,000	3,112,000	0
공무원 일·숙직비		60	60	0



## ○세부기준 및 편성내역

1)의정운영 공통경비 : 의원 1인당 4,800천원(예결특위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 4,800,000원×21명 = 100,800천원

※예결특위운영공통경비 : 1,000,000원×10명=10,000천원

2)의회운영 업무추진비

- 의 장 : 3,300,000원×1명×12월=39,600천원

- 부의장 : 1,600,000원×1명×12월=19,200천원

- 상임위원장 : 1,100,000원×4명×12월=52,800천원

- 예결특위위원장 : 1,100,000원×1명×4회=4,400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기준액을 적용 계상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지방의회 국외여비 : 의원정수 × 2,500천원(기준액 2,000천원에서 25% 가산)

- 21명 × 2,500,000원 = 52,500천원

※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범위에서 자율 조정 가능

4)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 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분 포함) 등은 한도에서 제외

5)통장 활동보상금

- 기본수당 월 200천원 이내 : 200,000원×706명×12월=1,694,400천원

- 연 상여금 200% : 200,000원×706명×200%=282,400천원

-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 2회) : 20,000원×706명×2회×12월=338,880천원

6)맞춤형복지제도 운영 : 2,000,000원×1,556명=3,112,000천원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 하세요(<http://lofin.moi.go.kr>)

#### 4-6.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5년도 해당사항 없음